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명확화〉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50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02. 06.
3. 회 부 일 : 2026. 02. 0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양인들의 ‘뿌리를 알 권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도 ‘부모를 알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입양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양 국가책임제로의 전환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의 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됨.

그런데 법률에 입양정보의 공개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접수를 기한 없이 지연하는 사례가 수백여 건 발생하는 등 입양정보의 공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청구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양인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명확히 하고, 입양정보의 공개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절차, 불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입양된 사람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3조). 이 개정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해 해외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준용됨.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의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처리 기간 설정, 진행 상황 통지, 기간 연장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9조(「민법」과의 관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u>다른 법률과의 관계</u>) ----- ----- ----- ----- <u>따르고, 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생략) <u><신설></u>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입양</u>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u>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u>	<u>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u> 1. <u>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 2. <u>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u> ③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u>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u>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날 또는 말로써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양정보를 공개하</u>

현행	개정안
<u>를 공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u> <u><신 설></u> <u><신 설></u>	<u>여야 한다. <단서 삭제> 이 경우 청구인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또는 거주 지역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입양정보를 공개하되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u> <u>⑤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의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u> <u>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이나</u>

현행	개정안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u>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u> ⑦ 제4항 후단----- ----- -----<u>없거나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u>----- ----- -----. ⑧ <u>입양정보의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20일이 경과”는 “제4항 및 제</u>

현행	개정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기간이 경과”로, “공공기관”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 본다. ⑨ -----제8항----- ----- ----- -----.

□ 현행법은 양자가 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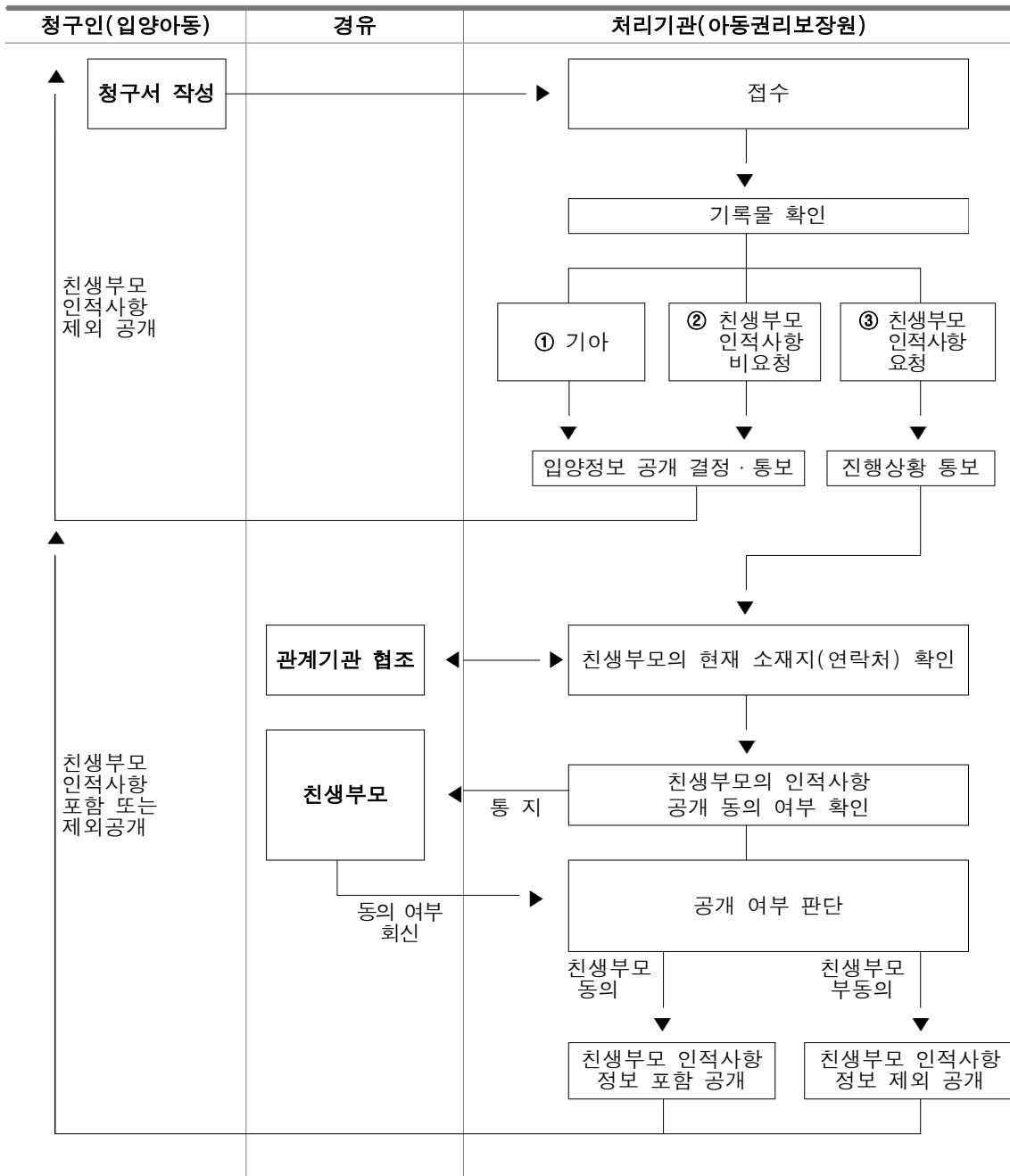
□ 나아가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같은 조 제3항).¹⁾

1) 「모자보건법」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

< 입양정보 공개 제도 개요 >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보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입양정보공개청구 현황을 보면, 총 청구 건수 11,311건 중 정보 오류·미비 등으로 소재지 조회가 불가능한 2,515건(22.2%)를 제외하고, 친생부모 정보를 포함한 소재지가 조회된 5,320건²⁾ 중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2,170건으로 40.8%에 달하는바, 이 중에는 친생부모 본인이 통지를 받고도 응답을 하지 않거나 입양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사례가 포함됨.

< 2021년 ~ 2025년(9월) 입양정보공개청구 현황 >

(단위: 건)

연도	총 청구 건수	소재지 조회 요청(진행완료)							친생부모 정보없음 (기아)	소재지 조회 미요청*	진행 중
		조회 완료 총계	조회 성공					조회 불가			
			소계	공개 동의	미동의	사망	확인 불가				
2021	1,327 (100%)	1,158 (87.3%)	833 (62.8%)	298 (22.5%)	535 (40.3%)			325 (24.5%)	160 (12.1%)	9 (0.7%)	-
				상봉 15	125 (9.4%)	90 (6.8%)	320 (24.1%)				
2022	2,043 (100%)	1,430 (70.0%)	960 (46.99%)	319 (15.6%)	641 (31.4%)			470 (23%)	200 (9.8%)	413 (20.2%)	-
				상봉 42	128 (6.3%)	142 (7.0%)	371 (18.1%)				
2023	2,717 (100%)	1,926 (70.9%)	1,261 (46.4%)	391 (14.4%)	870 (45.2%)			665 (24.5%)	243 (8.9%)	548 (20.2%)	-
				상봉 215	171 (6.3%)	160 (5.9%)	539 (19.8%)				
2024	3,374 (100%)	2,234 (66.2%)	1,531 (45.4%)	460 (13.6%)	1,071 (29.8%)			703 (20.8%)	358 (10.6%)	782 (23.2%)	-
				상봉 259	211 (6.3%)	222 (6.6%)	638 (18.9%)				
2025** (1 ~ 9월)	1,850 (100%)	1,087 (58.8%)	735 (39.7%)	194 (10.5%)	541 (29.2%)			352 (19%)	248 (13.4%)	510 (27.6%)	5 (0.3%)
				상봉 91	127 (6.9%)	112 (6.1%)	302 (16.3%)				
합계	11,311 (100%)	7,835 (69.3%)	5,320 (47%)	1,662 (14.7%)	3,658 (32.3%)			2,515 (22.2%)	1,209 (10.7%)	2,262 (20%)	5 (0.04%)
				상봉 622	762 (6.7%)	726 (6.4%)	2,170 (19.2%)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청구 건수 및 처리결과 수기 취합)

주: 소재지 조회 미요청이란 친생부모 정보 미비, 입양서류상 친생부모 이미 사망으로 확인, 친생부모 이미 찾을 등의 사유로 입양인 요청에 따라 소재지 파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2) 소재지 조회 완료 총계는 7,835건으로 조회 성공 건수(5,320건)와 조회 불가 건수(2,515건)를 합한 건수임.

□ 참고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서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갖고 있는 아동의 출생에 관한 정보 특히 병력과 그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이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제7조제1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양인의 정보공개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친생부모에게도 공개 거부·연락 거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법원이 중개인을 지정하여 친가족과의 만남을 중개하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입양정보공개 관련 제도 >

국가	공개거부권	기밀중개제도	연락 거부/선택권	입양정보등록시스템
한국	X	X	X	X
미국	○	○	○	○
호주	○	X	○	○
캐나다	○	X	○	○

자료: 보건복지부

주1: (공개거부권) 친생부모 및 입양인 등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공개 거부권 제도

주2: (기밀중개제도) 법원에 기밀 중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법원이 공인 기밀 중개인을 지정하여 비공개 입양 서류에 접근하고 친가족 등을 찾아 상봉을 지원

주3: (연락 거부/선택권) 정보는 공개되지만 이후 연락을 받고 싶지 않으면 연락 거부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호하는 연락 방법이 있는 경우 연락 선택권을 신청할 수 있음

주4: (입양정보등록시스템) 입양정보등록시스템에 상호 정보를 등록하고 정보공개에 동의 한 경우 식별정보 제공

□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입양정보공개 청구인의 제출서류, 본인 확인 절차, 청구권자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일³⁾과 접

3) 청구인이 입양정보공개청구서와 신분증명서를 보장원에 제출한 날짜

수일⁴⁾을 구분하여 운영 중인데, 이에 따라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접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⁵⁾.

-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준용을 명문화하고 정보공개 처리기한 명시, 진행 상황 통지 의무 등을 도입함으로써 입양정보 공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여 양자가 된 사람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 사항과 대통령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입양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개정안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교(일부)>

개 정 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입양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u> 1. 청구인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u>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 및 제2호 생략)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4) 제출한 청구서, 서류 등에 보완이 불필요하거나 보완이 완료되어 절차 진행을 위해 접수한 날짜
5)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접수 지연 사유로 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제출 요청, ② 법정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요청을 이유로 접수가 지연된 사례가 있다고 함.

<개정안 및 시행령 비교(일부)>

개 정 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⑤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u>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의 진행 상황을 통지</u> 하여야 한다.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 ⁶⁾ 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u>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u> 해야 한다.
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4항 전단에 따른 기간을 <u>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u>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u>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u> 할 수 있다.

□ 개정안 제33조제7항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40.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입양인의 알 권리를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부모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청구인에게

6)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제공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청구인의 알권리와 친생부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간의 이익형량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친생부모가 일정 기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912,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나아가 개정안은 제33조제2항에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 현행법 제4항(개정 후 제9항으로 존속)에서는 정보공개청구의 신청방법이나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의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관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친생부모의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입양인의 알 권리와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보호가 충돌할 소지가 있으나,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건강권 및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입양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 규정은 이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기관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친생부모 동의 여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은 입양인의 알 권리와 친생부모의 개인정보 보호가 충돌할 소지가 있으나,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건강권 및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 시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입양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 규정은 이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실익 낮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동의”로 간주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므로, 국회 논의(가치판단) 필요하다는 의견 ○ 안 제33조제4항제2문에 규정된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또는 거주 지역”의 공개여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또는 거주 지역”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서 제외되나, 해당 정보가 ①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청구인에게 공개되는 정보인지, ② 공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정보인지 불명확함
325KAMRA ⁷⁾	○ 현재의 모든 법적·행정적 장벽을 해소하는 전폭적인 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일부개정안 외 추가 개정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 ①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 동의 없이도 정보공개 가능, ② 청구인을 입양인을 비롯한 입양인의 직계비속까지, 청구대상을 친생부모 외 형제 등 가족까지 범위 확대, ③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번호 확보
국내입양인 연대	○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의견이며, 일부개정안 외 추가 개정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함 * ①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므로, 친생부모 사망 시 정보공개, ② 친생부모가 인적사항 항목 정보제공에 비동의하더라도 인적사항 일부 항목이라도 제공(예: 이름 :홍XX, 생년월일 : 1980XXXX, 주소 : 서울 종로구 XXX)

문 의 처

02) 6788-5500

7) 유전자 검사로 해외입양인의 가족을 찾는 비영리기관